

- ** 인문사회계열 학과(부) 분류는 「대학설립·운영규정」 별표1 및 '25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에 따르며, 인문학 및 기초학문, 사회계열 전공 간 고른 선발 진행
- *** 신입학 즉시 휴학 후 복학한 경우 신입생으로 간주
- ※ 교육계열 중 초등교육의 수학·과학·컴퓨터 등 이공계 분야 교육 학과(부), 중등교육의 자연과학·공학계열교육 및 예체능교육 학과(부)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□ (선발제외 대상)

- '25년도 현재 인문100년장학금 장학생 자격 유지자 또는 기존 인문100년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영구탈락자
 - ※ 단, 동 대학 자퇴 후 신입학, 타 대학에서 신·편입학 등의 경우 선발 가능 (기 수혜학기 수를 제외한 잔여학기만큼 지원 가능)
- 동일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*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
 - * 대통령과학장학금, 국가우수장학금(이공계), 예술체육비전장학금, 전문기술인재장학금,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(희망사다리 I),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(희망사다리 II)
- 비정상적인 학사관리, 소득탈루·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(최대 2년 범위 내 학자금 지원 제한)
 - ※ 학자금심의위원회(대학),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(학생) 심의를 거쳐 제한
 - ※ 「공공재정환수법」 시행('20.1.1.)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
- 계약학과*(등록금 전액/일부지원) 재학생 선발 제외('15년부터)
 - * 계약학과: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분야의 정규학과(채용조건형, 재교육형 등)
- 아래 법령 등*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는 교육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, 보훈대상자, 북한이탈주민 등)는 II유형 선발 대상에서 제외 (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선발 가능하며 등록금 학생부담분에 한해 지원)
 - 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5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